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통합 계약서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이하 “통폐합 조례”라고 함)”가 공포(2022년 12월 28일)됨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 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하 “스포원”이라 함)의 효율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통합의 방법) ① 스포원은 시설공단과 통합하여 해산하며 시설공단은 통합 이후 존속한다.
② 통합 후 존속 법인의 명칭은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

제2조(통합 기일) 시설공단과 스포원의 통합 일자는 2023년 3월 31일로 하되 통합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통합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시설공단과 스포원은 본 계약의 승인 및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2023년 2월 15일 개최하기로 한다. 다만, 통합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자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 ① 스포원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표 및 기타의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통합기일에 이르기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통합기일에 시설공단에 인계하고, 시설공단은 이를 인수한다.
② 스포원은 제1항의 승계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일 이후 지체 없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 통합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 관계의 변동상황을 반영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시설공단에 제출한다.
③ 스포원의 목적사업은 통·폐합 조례에 따라 시설공단이 수행하고 시설공단은 스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통합 전 스포원의 업무상 행위는 통합 후 시설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정관의 변경) 시설공단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과 개정된 통·폐합 조례를
이행하기 위하여 통합 기일 전까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기로 한다.

제6조(고용승계 등) 시설공단은 통합기일 당시 스포원의 근로계약상 유효한 근로
자의 고용 및 노동조합의 지위, 권리,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다.

제7조(관리자의 의무) 시설공단과 스포원은 본 계약 체결 후 통합기일에 이르
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재산 및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계약 체결 후 통합기일까지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설공단 또는 스포원의 재산 및 경영
상태 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합의하여 통합
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시설공단과 스포원의 각 이사회의 결의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협조 사항) 본 계약 규정 이외에 통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보칙) 통합 공단의 조직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하여는 시설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별도 마련하며, 통합 이후 새로운 규정의
시행 전까지는 시설공단과 스포원의 기존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2023년 1월 27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인호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직무대행 김석빈